

정보소비자의 피해구제

이 해 복

대한언론인회부회장, 중재위원

I. 서론

오늘날 인류사회는 공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역사적인 전환을 하는 전환기에 있다.

이제까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부터 정보의 대량생산과 고도의 정보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고 현대사회는 주로 산업의 정보화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생활의 정보화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정보의 기원을 따져보면 사실 생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다고 볼 것으로 생물은 자기생존을 는 상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판별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행동을 취한다.

우리가 현대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언론을 하나의 가장 유용한 정보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신문, 방송, 잡지, 서적, 영화, 비디오테이프나 오디오테이프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값싸게 대량으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보도, 논평, 교육, 오락활동 외에 광고매체로서의 활동 등 사회에 대해서 실로 다양한 정보제공활동을 통해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론이 거대한 조직집단을 구성해 기계적, 기술적 수단으로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분산된 불특정다수의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므로 수용자로부터 정보를 송출하는 대중매체에 그것을 feedback(송환)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은 전달하는 측에서 수용하는 측으로 일방적인 흐름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때문에 언론이 신속, 정확,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 정보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우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제때에 필요한 정보를 뒤늦게 전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내지 불공정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정보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신속, 정확, 공정한 언론활동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확보돼야 되지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격자로서 자유에 수반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여기서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 필요하지만 언론의 힘이 거대해질수록 그 횡포를 막기 위해서도 사회적, 공적 규제 또한 필요하다는 논거가 서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신문평의회 (Press Council) 형태의 공적인 규제제도가 마련됐는데 그 시초는 1916년 스웨덴에 설치된 신문평의회였다.

신문평의회는 ① 신문의 자유 옹호, ②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감시, ③ 독자로부터 취재 기사에 대한 불만처리, ④ 신문과 뉴스 소스 사이의 문제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규제기구이다.

스웨덴에 이어 2 차대전 전에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에도 신문평의회가 설치됐으나 1953년 영국에 신문평의회가 설치되면서 급속하게 세계각국에 그와 비슷한 제도가 생겼다.

우리나라에도 신문윤리위원회가 있고 윤리헌장이 있어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각 언론사마다 자체규제기구로 심의기구가 있지만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론관계법 즉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로 공적 통제기구인 언론중재제도(폐기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1981년에 이미 창설)를 존치·강화한 것이다.

언론중재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언론창달을 위해 아울러 필요한 공적 통제기구로서 외국의 신문평의회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3 장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제 16 조에),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 14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1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③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 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 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 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 중재와 정기간행물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 심의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 40 인 이상 70 인 이내로 구성, 위원 2/5 이상은 법관자격이 있는 자를 위촉) (동 법 제 17 조)를 구성, 중재를 담당하게 되나 이것은 보도가 발생한 이후에 관여하는 사후장치로 사전에 언론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다.

더구나 중재위원회는 외부압력에도 초연한 독립기구로 언론인들 자체에 의한 자율적 규제기구가 아닌 공적 통제기구로서 언론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하는 사법적 제도가 아닌 전치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언론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언론을 상대로 직접 사법적 절차를 밟게 될 때 필요한 엄청난 소송비용이나 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장구한 소송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물적, 시간적 부담이 전혀 필요 없을 뿐더러 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언론사 역시 시민을 상대로 보도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맞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나 시민 모두가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언론의 창달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언론중재에 관한 법에는 「추후보도청구권」까지 제정 정기간행물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끝났을 경우에 대한 무죄추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권리와 기회를 주어 중재위원회가 추후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까지도 중재하게 있어 형사피의자의 명예회복문제에까지 관여, 인권신장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공무원(법관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규정, 중재에 있어 정당의 영향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며, 중재위원회가 직접 그릇된 보도내용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II. 언론중재 사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를 1987 년도에 중재신청된 사건사례 속에서 몇 가지를 열거해보기로 한다.

1987 년의 경우 모두 47 건 중 취하가 27 건(58%), 합의가 10 건(21%), 불성립이 9 건(19%), 기각이 1 건(2%)의 순위로 돼 있으나 27 건의 취하 중 19 건이 정정보도 또는 언론사의사과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음을 감안할 때 합의 10 건과 취하된 사건 중 19 건, 합계 29 건(신청건수의 60%)은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해서 그 성과를 얻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릇된 보도를 했을 경우 언론사에서 떳떳하게 정정보도를 하는 의연한 자세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진정한 자세일 것으로 아쉽게 여겨지는 점이다.

◎ 사례 1

허위 고백수기에 사진도 무단게재

이 사건은 월간잡지 「여성자신」 1987년 1월호에 실린 『스타로 가는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였다』 제하의 고백수기로 어느 가수지망생이 가수가 되기 위해 작곡사무실에서 교수를 받은 후 레코드 취입을 시켜준다는 작곡가 꺾임에 빠져 돈 잃고 몸을 망친 후, 밤무대, 술집 등을 전전하다가 죽음을 생각하며 쓰는 통곡수기인데, 신청인(이모 여인)은 「<여성자신>의 기자가 수기를 게재해 준다 하여 자신의 지나온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적었으나 인터뷰내용은 전연 실지도 않고, 관계없는 기사에 자신의 사진만 게재, 수기당사자인 양 오인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중재결과 피신청인과 합의, 결국 1987년 3월초에 문제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정한다」는 내용과 「게재된 사진은 수기의 당사자가 아님」을 밝히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한다」는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 사례 2

허위사실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

이 사건은 「주간여성」의 1987년 10월 18일자지면에 게재됐던 『일문일답 독점공개』, 『박대통령 시해 궁정동 10·26 현장의 여인 신재순』 제하의 기사내용.

10·26 이후 8년만에 박대통령 시해현장 궁정동 중앙정보부장 공관 옆 비밀식당에서 최후의 만찬에 가수 심수봉과 함께 게스트로 초대돼 박대통령 왼쪽에 앉아 있다가 총에

맞고 쓰러지는 박대통령의 최후순간을 지켜본 신여인이 당시 상황을 일문일답으로 털어 보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여인은 「주간여성」의 어느 누구와도 보도된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 일체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일문일답한 것처럼 임의로 일방적 보도를 했는데, 내용 중 대부분이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신청인 개인은 물론 가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니 피해가 막심, 회복불능사태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주간여성」은 1987년 11월 15일자 「연예파노라마」란에 신재순 씨와의 일문일답부분 내용에 대해 신 씨로부터 일체들은 사실 없이 게재했음을 밝히고, 문제의 기사로 인해 신씨에게 끼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는 중재합의내용(정정보도문)을 게재함으로써 사건은 해결되었다.

◎ 사례 3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게재

「월간스포츠」 1987년 2월호에 게재됐던 「90년대를 기다리는 스포츠」(82~89면), 『은반의 요정 소녀헤네』(124~127면), 『공포의 간염 떨고만 있어야 하나』(142~145면), 『힘찬 날개짓으로 민족의 자부심을 지킨다』(246~257면) 제하 기사는 대한체육회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그것이 대한체육회와는 아무 협의도 없이 대한체육회 발행의 「월간체육」 1986년 11월호의 기획기사를 무단복제 게재함으로써 대한체육회의 명예를 훼손케 했으니 정정보도하라는 중재 신청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월간스포츠」측에서 「사전승인 없이 기사를 게재하여 미안하다」는 사과공문을 대한체육회 측에 보냄으로써 중재신청이 취하되었다.

◎ 사례 4

만화학원광고등에 성명과 사진도용

이 사건은 월간 「만화광장」 1987년 12월호에 만화연구원 개원을 알리는 광고와 380~381면에 「Q&A」란이 보도된 바 있는데 평론가 이원복 씨 등을 강사로 모신다는 광고와, 「Q&A」란에 덕성여대 이원복 등 교수 3명의 사진을 게재 사진설명과 함께 독자들 질문의 응답자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원복 씨 등은 사진과 성명을 「만화광장」에서 도용,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사건 역시 「만화광장」에서 정정보도를 약속하자 중재신청을 취하, 1988년 1월호 「만화광장」에 정정보도를 냄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사례 1 과 사례 2 는 전연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관계로 사과,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지만 독자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관련자와 만나지도 않고 만난듯이, 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사진까지 무단 사용한 사례로, 최근 일부 대중잡지에서 흔히 범하고 있는 사례로 언론의 품위를 해치는 전형적인 실례로 지적될 수 있다.

사례 3 과 사례 4 의 경우 관계단체의 사전 양해 없이 기사를 무단복제 게재할 경우, 또 개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개인의 성명과 사진까지 도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로 무책임한 보도행위에 좋은 경고가 되는 사례였다.

이와는 좀 다른 측면의 또 하나의 사례를 다음 내용에서 볼 수 있다.

◎ 사례 5

기사내용과 다른 제목이 정정대상

이 사건은 「KBS 여성백과」 1987년 12월호 84면에 게재됐던 「앙케에뜨,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란에 서지문 교수의 『안정 속에 지속성장을 기대한다』는 기사제목이 문제된 것.

기사내용은 우리나라는 역사적 전기에 처해있다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는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안정 속에 지속성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랑, 우리민족 진로에 대한 비전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을 가진 사람이어야 우리나라를 확실히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사내용과 제목이 전혀 부합되지 않고, 더구나 그 제목이 모정당 선거구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 「마치 모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제목을 정정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져 「KBS 여성백과」 1988년 1월호 85면에 『안정 속에 지속성장을 기대한다』는 제목은 필자(서지문 교수)가 의도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랑이라야 한다」로 정정한다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기사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달았을 경우 관련자가 그것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언론사는 이에 응해야 된다는 실례였다.

이밖에 언론사가 흔히 범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중재신청사례가 가장 많다는 것은 지난 7년 동안의 중재신청사례에서 알 수 있는 그 중 몇 개를 다음에 소개한다.

◎ 사례 6

소문만 근거로 깊은 관계 있는 듯 보도

1987년 6월 14일자 「주간중앙」의 「연예 핫뉴스」란에 『인기스타 강수연 총각감독 이규형 화끈한 사이』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는데 「뜨거운 소문이 나돌고 있는 소문의 내용인즉 두 사람의 밀회 현장이 목격되었고 결혼날짜를 잡았다는 등 소문은 다양하나 구체적 물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당사자들은 소문을 근거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기자가 임의조작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정정보도를 하라는 것이었다.

중재결과 「주간중앙」은 1987년 6월 28일자에 「강수연·이규형 감독 스캔들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의 기사는 「본지 기자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근거 없이 쓸 기사」였다고 밝히고 그로 인해 강수연 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는 내용의 정정 기사를 실었다.

문제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있지도 않은 소문을 조작,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면 당연히 정정 사과해야 할 것으로 언론자유화 이후 일부 대중잡지등에서 경쟁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선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자세에 역시 좋은 경고가 되는 중재 사례였다.

◎ 사례 7

촬영목적과는 달리 독신녀 문제 특집에 사진이용

월간 「마드모아젤」 1987년 6월호에 『혼자이고 싶으면 철저하게 준비하라』 제하의 기사(8-339면)에서 「독신생활자에게는 고독감을 메꾸어 줄 사교적인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사진설명과 함께 박모 양의 사진이 게재됐는데 중재신청을 한 박 양은 「이대 앞 카페 정경」이라는 내용에 실을 자료사진 요청에 응해 촬영을 합의한 바 있으나 그 기사와는 달리 「여자혼자 잘 사는법」이란 기사에 마치 독신을 고집하는 여성들처럼 사진이 보도됨으로써 결혼을 앞둔 신청인으로서 중대한 명예훼손이니 사진 정정을 하라는 것이었다.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마드모아젤」 1987년 8월호 335면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에 그 사진이 본인들의 동의와 관계없는 기사에 게재됐고 그 속의 인물들이 총력 가이드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임을 밝혔다. 결국 기자가 취재대상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때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례의 하나였다.

이 사례와는 좀 다른 내용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사례도 있다

◎ 사례 8

육필수기인 양 이름 도용

「박종철 군의 여자친구 조윤정 양의 수기」 제하의 기사가 「가정조선」 1987년 5월호(334-345면)에 게재됐는데 고문으로 죽은 박 군의 여자친구 조모 양이 박 군과 입학식때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의 우정과 사랑을 담은 수기형식으로 내용이 엮어져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유기고가 조모 씨가 박 군의 평전을 쓴다 하며 신청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인터뷰에 응했는데 인터뷰 내용도 흥미위주로 왜곡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이름을 도용, 직접 쓴 수기인 양 보도했으니 정정하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중재결과 「가정조선」 1987년 6월호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하였고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사죄광고 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괄하여 법원판결에 따르겠다고 정정보도를 거부, 불성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재부는 조선일보사에 시정권고를 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신청인은 법원에 계류중인 소를 전부 취하, 조선일보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정조선」 1987년 7월호를 일간신문 5개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산일보, 광주일보, 대구매일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조 양의 수기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게재됐음을 알리고 조 양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 7월호 표지와 목차에까지 정정보도문이 게재됐음을 표시, 본문에 사과문과 정정보도를 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신청했던 당사자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한때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를 취하하고 사태를 수습하였다.

◎ 사례 9

판결문 내용을 오보

「주간과학」 1987년 8월 3일자 7면에 『김성철 피고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서울형사지법 산업스파이 사건 선고』 제하의 기사가 보도됐다. 서울형사지법이 「태준제약」 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린 「삼천당제약 이사 김성철 피고인과 영업관 계장부를 빼돌린 영업부장 배근호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는데 산업스파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중하나 현행형법상 절도죄만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어 관계규정을 적용, 피고인들을 체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청인(김성철)은 태준제약 근무 시 보관했던 판매관계서류를 퇴직 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절도가 아닌 횡령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으며, 생산관계서류가 아닌 판매관계서류이므로 산업스파이 운운은 부당하니 정정하라는 것이었다.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주간과학」 은 1987년 8월 31일자 지면에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적용됐으며 김 씨의 경우 보건의원의 시험성적통보서 사본 등 10가지 서류를 지니고 있었으나 직접 생산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자가 판결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화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

◎ 사례 10

범죄피의자의 허위진술 확인 없이 보도

1987년 9월 23일 오후 5시 부산 MBC 라디오 「뉴스터미널」 시간에 부산 동아대학 권철현 교수 피습 사건이 보도된 바 있었다.

내용인즉 「권 교수를 습격한 범인 김광일을 검거했는데 범인 김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권 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가진 데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는 것으로 「사건전모는 저녁 7시에 발표예정」 이라고 뉴스는 덧붙였다.

그러나 권 교수는 「범인이 범행동기를 조작, 범인의 이혼한 처와 신청인이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 하였다고 횡설수설했으나 경찰수사결과 범행동기는 사실무근이며 허위임이 드러났으니 정정보도하라」 고 요구했다.

중재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산 MBC 라디오는 1987년 12월 10일 같은 시간에 「뉴스터미널」 에서 「범인 김은 평소 고등학교 선배인 권 교수가 자기의 전처와

불륜관계를 믿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 하였다.

사실 이 사건은 부산문화방송에서 사건보도를 한 후 3 시간 만에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이 공식발표를 통해 「권 교수를 살해하려던 피의자 김은 학교동창생들을 찾아다니며 여성과의 불륜관계 운운, 금품을 갈취해 오던 자로 권 교수와는 1977년 9월에 김을 취직시켜준 관제로 면식이 다소 있음을 기화로 범행당일 권 교수집을 찾아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파출소에 신고, 뜻을 못 이루자 권 교수를 살해하려 했고 정신병력이 있는 자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경찰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 범인의 자백내용만을 믿고 보도한 부산 MBC 라디오 뉴스 때문에 대학교수로서의 명예훼손은 물론, 근무처(동아대학)의 명예까지 크게 침해당한 결과가 된 셈이다.

물론 부산 MBC 라디오로서는 뉴스의 출처가 경찰에서의 범인의 자백에 의한 것으로 근거는 있는 것이나 역시 진실 아닌 오보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경찰관계 사건보도에 있어 경찰 자체도 피의사실 공표에 유의해야 될 일이나 취재기자들 자신도 명예훼손을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취재가 요망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지적될 수 있다.

여기서 중재사례에 있어 1988년에 들어서서 특이 한 신청 사건의 한 유형으로 신문광고내용을 포함한 한 기업과 관련된 보도내용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중재가 불성립으로 끝났으나 그것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경우 과연 어떠한 결론이 맺어질 것인지 매우 주목되는 바 있다.

신청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지면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을 열거한다면 중앙일보 1988년 6월 11일자 사회면에 게재된 「파스퇴르 우유 부도덕상행위 말썽」 제하의 기사, 역시 동지 6월 22일자에 게재된 『파스퇴르우유 너무 비싸다』 제하의 기사, 「파스퇴르우유 집유권역 어기고 마구 사들여」 제하의 6월 29일자 기사, 동지 7월 23일자 칼럼란에 실린 「파스퇴르우유에 관한 부분」 등이 파스퇴르우유(대표이사 최명재)에 대한 왜곡 보도로 독자들의 판단을 해치고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으니 정정보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중재가 진행되었으나 중앙일보측은 사실과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공정한 보도임을 주장, 결국 모두 불성립으로 끝나 사건의 시비는 법정으로 옮겨갈 추세이다.

III. 지난 7년 동안의 중재내용

여기서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중재처리 결과를 살펴보면(<표 1> 참조) 지난 8월 11일 현재로 중재신청건수가 409건이었는데 그 중 합의된 것이 105건(신청건수의 26%), 불성립이 134건(33%), 신청이유가 없다고 판정돼서 중재부에서 기각한 것이 11건(3%), 지정된 기일 안에 신청을 안한 것 등 신청요건미비로

각하된 것이 5건(1%), 신청은 했으나 신청인측 사정에 따라서 취하한 것이 151건(37%)이나 된다.

한편 지난 7년 남짓한 기간에 집계된 중재처리결과에 따르면 합의된 것이 전체신청건수의 26%인데 비해 불성립된 것이 33%로 합의된 것보다 많고 불성립된 것보다도 신청인측 사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이 37%로 가장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중재가 불성립으로 끝난 이유를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관계자의 불출석, 특히 피신청인측(언론사측)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데도 큰 원인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중재가 불성립된 건수는 1건이었는데 그 중 피신청인(언론사측)과 신청인(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측) 모두가 출석했지만 합의가

<표 1> 7年間 仲裁處理累計 (1988. 8. 11 현재)

연도	구분	합 의	불 성 립	기 각	자 하	취 하	계 류	신청건수
1981년		9(20%)	12(27%)	1(2%)	2(5%)	20(46%)		44(100%)
1982년		19(38%)	19(38%)		2(4%)	10(20%)		50(100%)
1983년		21(30%)	22(31%)	1(1%)	1(1%)	26(37%)		71(100%)
1984년		12(22%)	29(54%)	3(6%)		10(18%)		54(100%)
1985년		12(20%)	28(48%)	4(7%)		15(25%)		59(100%)
1986년		14(29%)	10(20%)	1(2%)		24(49%)		49(100%)
1987년		10(21%)	9(19%)	1(2%)		27(58%)		47(100%)
1988년		8(23%)	5(14%)			19(54%)	3(9%)	35(100%)
계		105(26%)	134(33%)	11(3%)	5(1%)	151(37%)	3(0.7%)	409(100%)

<표 2> 不成立原因 (1988. 8. 11 현재)

연도	구분	불성립건수	불출석으로 인한 불성립			합의결렬
			신청인 불출석	피신청인 불출석	쌍방 불출석	
1981년		12	1	6		5
1982년		19	1	7	2	9
1983년		22		8		14
1984년		29	4	6	3	16
1985년		28	3		5	20
1986년		10	1		1	8
1987년		9				9
1988년		5				5
계		134	10	27	11	86

〈표 3〉 言論社의 仲裁期日 出席率

(1988. 8. 11 현재)

연도	구분	중재대상	출석요구	출석	비고
1981년		44	33	18 (54.5%)	기각 1건, 각하 2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8건은 중재기일전 취하로 출석요구가 취소.
1982년		50	48	35 (72.9%)	각하 2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3년		71	64	46 (71.9%)	취하 6건, 각하 1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4년		54	51	38 (74.5%)	기각 3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5년		59	55	37 (67%)	기각 4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6년		49	44	29 (66%)	기각 1건, 취하 4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7년		47	24	22 (91.6%)	취하 23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1988년		35	21	20 (95.2%)	취하 11건, 계류 3건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음.
계		409	340	245 (72.0%)	

이뤄지지 못해 불성립된 것(합의결렬)이 절대다수로 86 건(64%)이었으나 피신청인측(언론사측)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불성립된 것이 27 건(20%)이나 되어 언론사측의 중재불응경향이 두드러졌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언론사측의 이해와 협조자세가 차츰 달라져 중재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나오고 있음은 1985년 이후 언론사측의 일방적 불출석으로 중재가 불성립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특히 1988년에 들어서는 신청인측은 물론 언론사측도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예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 중재 사건에 대한 언론사측의 대응자세가 전연 달라져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장치로서 또 한편 언론이 지닌 공적 기구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향상 유지시키는데 있어 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해결 가능한 중재역할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언론중재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여기서 언론사측의 중재기일 출석률을 좀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1981년 언론중재제도 설치 초기에는 중재위원회 측 출석요구에 대해 출석률이((표 3) 참조) 불과 54.5%였으나 점차 출석률이 높아져 1987년도에는 출석률이 91.6%로 향상되었고, 1988년에 들어서는 95.2%의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 7년 동안의 중재 사건 중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한 내용을 살펴보면(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취하이유가 다양하다는 점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즉 신청인이 자진해서 취하한 예로는 중재신청을 했으나 중재에 임하기 전에 언론사측이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진취하하는 예와 신청인이 개인상 이유로 자진취하하는 예도 있으나 언론기관이 알게 모르게 유관기관, 사직당국을 동원함으로써 외부압력의 영향으로 중재신청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인지되고 있어 주목된다(전체 취하건수 151 건 중 29 건).

그러나 1988년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압력취하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또한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진취하나 압력에 의한 취하 말고도 이른바 회유(언론사측의) 방법에 의해 취하되는 예가 76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언론사측의 호의표시, 또는 사과에 의해 취하하는 경우와 정정보도 내지 수정기사 게재를 약속함으로써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로 그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이다.

한편 언론침해의 유형을 보면 명예훼손·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관계 포함)가 가장 많아 지난 7년 동안 언론침해 사건으로 중재 신청된 409 건 중 292 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권(재산)침해건수가 108 건(27%)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저작권침해가 9 건(2%)으로 가장 적었다(<표 5>참조). 이와 같은 중재신청 내용으로만 미뤄보더라도 언론사에 의해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침해 또는 신용권 훼손에 저촉되는 보도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언론사종사자 특히 보도부문 종 사자들의 품위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언론침해사실을 중재위원회에 신청해 온 신청당사자의 유형(<표 6> 참조)을 분석해 보면 총 신청건수 409 건 중 개인이 232 건(5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회사로 84 건(21%), 세번째가 49 건(12%)으로 일반단체, 네번째가 종교단

<표 4> 取 下 理 由

(1988. 8. 11 현재)

연도	취하 이유	자 진 취 하		압력취하	회 유 취 하		계
		취하권 정정보도 인하여	신청인 개인상의 이유로 인하여	유관기관·사적당국을 동원함으로써	호의표시나 사과에 의하여	정정보도나 기사게재를 약속함으로써	
1981년		1 (5%)	3 (15%)	15 (75%)		1 (5%)	20
1982년			1 (10%)			9 (90%)	10
1983년		2 (7.7%)	1 (3.8%)	6 (23.1%)	6 (23.1%)	11 (42.3%)	26
1984년		2 (20.0%)	1 (10%)		3 (30.0%)	4 (40.0%)	10
1985년		5 (33.3%)	1 (6.7%)	3 (20%)	4 (26.7%)	2 (13.3%)	15
1986년		9 (37.5%)	8 (33.3%)	1 (4.1%)	4 (16.6%)	2 (8.3%)	24
1987년		1 (3.7%)	4 (14.8%)	4 (14.8%)	15 (55.5%)	3 (11.1%)	27
1988년		4 (21.0%)	3 (15.8%)		8 (42.1%)	4 (21.0%)	19
계		24 (15.8%)	22 (14.5%)	29 (19.2%)	40 (26.4%)	36 (23.8%)	151

<표 5> 侵 犯 類 型

(1988. 8. 11 현재)

연도	유형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 (재산)	저 작 권	계
1981년		23(52%)	15(34%)	6(14%)	44(100%)
1982년		41(82%)	9(18%)		50(100%)
1983년		58(82%)	13(18%)		71(100%)
1984년		39(72%)	12(22%)	3(6%)	54(100%)
1985년		44(74%)	15(26%)		59(100%)
1986년		25(51%)	24(49%)		49(100%)
1987년		39(83%)	8(17%)		47(100%)
1988년		23(66%)	12(34%)		35(100%)
계		292(71%)	108(27%)	9(2%)	409(100%)

체의 19 건(5%), 다섯번째가 공공기관단체로 16 건(3%), 그 다음이 학교 7 건(2%), 종친회 2 건(0.5%)으로 되어 있다.

큰 회사나 공공기관 단체는 중재신청을 되도록 회피하는 대신 막후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짙은 것은 큰 기업체나 공공기관단체일 수록 언론기관과 맞설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크게 이로운 게 없다는 계산에서 언론침해사실이 있다고 인정돼도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이로운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지역별 중재신청 실적을 보면(<표 7> 참조) 서울지역이 84%이고, 지방이 16%이다. 피신청 매체유형별로 따져보면(<표 8> 참조) 역시 중앙의 일간지가 많아 169건(41%), 그 다음이 지방신문의 63건(15%), 주간지가 42건(10%), 월간지 36건(약 9%), 그 다음이 방송사 33건(8%), 주간신문의 31건(8%) 등의 순위로 되어 있다.

신문 방송을 통틀어 중앙의 일간신문이나 방송사가 언론침해로 중재신청대상이 된 것은 중앙의 일간신문의 수가 지방보다 월등히 많고, 방송사 역시 중앙의 그것이 보도활동량이 많다는 데서 연유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 지방의 경우 좁은 생활권 안에서 언론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경우를 감안해서 중재신청을 주저하는

<표 6> 申請人 類型 (1988. 8. 11 현재)

연도	유형	개 인	일반단체	회 사	학 교	종교단체	종 친 회	공공기관 단	계
1981년		25 (57%)	11 (25%)		1 (2%)			7 (16%)	44 (100%)
1982년		32 (64%)	6 (12%)	8 (16%)	1 (2%)	2 (4%)		1 (2%)	50 (100%)
1983년		42 (60%)	10 (12%)	9 (13%)	1 (1%)	7 (10%)	1 (1%)	1 (1%)	71 (100%)
1984년		36 (67%)	3 (5%)	5 (9%)	1 (2%)	7 (13%)		2 (4%)	54 (100%)
1985년		33 (56%)	9 (15%)	13 (22%)	3 (5%)	1 (2%)			59 (100%)
1986년		22 (45%)	5 (10%)	22 (45%)					49 (100%)
1987년		30 (64%)	4 (9%)	11 (23%)				2 (4%)	47 (100%)
1988년		12 (34%)	1 (2.5%)	16 (46%)		2 (6%)	1 (2.5%)	3 (9%)	35 (100%)
계		232 (57%)	49 (12%)	84 (21%)	7 (2%)	19 (5%)	2 (0.5%)	16 (3%)	409 (100%)

<표 7> 地域別 實績 (1988. 8. 11 현재)

연도	지역	서 울	지 방	소 계
1981년		37(84%)	7(16%)	44(100%)
1982년		44(94%)	6(6%)	50(100%)
1983년		61(86%)	10(14%)	71(100%)
1984년		46(85%)	8(15%)	54(100%)
1985년		48(81%)	11(21%)	59(100%)
1986년		38(78%)	11(22%)	49(100%)
1987년		42(89%)	5(11%)	47(100%)
1988년		29(83%)	6(17%)	35(100%)
계		345(84%)	64(16%)	409(100%)

경향이 짙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대도시에서는 그러한 점을 개념할 필요가 적을 뿐더러 대도시에서 일수록 언론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방어자세가 훨씬 왕성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재 신청된 언론침해 사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매체) 사이에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신청인측이 법원에 제소하여 시비를 가린 사건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1심에 제소된 사건이 모두 41건((표 9) 참조)으로 불성립건수 134건의 30%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언론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맞서기에는 재산상 뒷받침이나 시간이 부족한 일반서민들의 경우 70%는 법정투쟁을 포기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또한 법에 호소했다 하더라도 1심에서 원고의 제소사유가 인용된 것이 제소 41건 중 8건(20%)에 불과하고 11건(28%)은 기각, 18건(44%)은 취하, 화해가 이뤄진 것은 단 3건(8%)에 불과 하였다.

한편 참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내용(<표 10> 참조)을 보면 신청인 항소가 8건인데 비해 피신청인 항소가 4건으로 절반밖에 안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항소심 청구건수로 판단한다면 피신청인보다는 신청인(언론침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는 측)의 불만(1심판결의 경우)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외국의 사례

최근 외국에서 있었던 언론침해 사건에 대한신문평의회 내지 판결 예를 몇 가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媒體類型 (1988. 8. 11 현재)

연도	구분	중앙지	지방지	통신	중앙방송	지방방송	주간신문	월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기타	계
1981년		27	7	4	2		2		2			44
1982년		16	3	2	10	3	3		9	4		50
1983년		34	13	5	3	1	6	1	6	2		71
1984년		20	7	1	9	1	5		5	6		54
1985년		25	16	6	1		5	1	4	1		59
1986년		13	8		3	2	4		9	10		49
1987년		16	4	3	4	1	4		7	7	7	47
1988년		18	5	1	1	2	2			6		35
계		169 (41%)	63 (15%)	22 (5%)	33 (8%)	10 (2%)	31 (8%)	2 (0.4%)	42 (10%)	36 (9%)	7 (0.2%)	409 (100%)

<표 9> 法院提訴(一審) ※ 연도는 중재위원회 접수된 사건 기준

연도	구분	제소건수	인용	기각	화해	취하	계류	비고
1981년		4		2	2			
1982년		3	2	1				
1983년		7	4	2		1		
1984년		8		4		4		
1985년		12		2	1	9		
1986년		2	1			1		
1987년		4	1			3		
1988년		1					1	
계		41 (100%)	8 (20%)	11 (27%)	3 (7%)	18 (44%)	1 (2%)	

〈표10〉 抗 訴 審

(1988. 8. 11 현재)

연도	구분		결과									
	진	수	기	각	취	소	변	경	취	하	계	류
1982년	1	1					1		1			
1983년	1	1					1		1			
1984년	4			2					2			
1985년	2			2								
1986년		1		1								
1987년		1							1			
1988년												
계	8	4		5			2		5			

<미국>

명예 훼손한 CBS 300 만 달러 배상명령

지난 4 월 4 일 미연방 대법원은 사상 최고액(미디어측 피고의 경우)인 305 만 달러(약 22 억 2 천 650 만원)의 배상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했다.

원고는 담배회사인 B&WT 사, 피고는 CBS-TV 와 CBS 의 앵커맨 월터 제이콥슨 씨.

사건인즉 1981 년 11 월 11 일 제이콥슨 씨가 「월터 제이콥슨의 전망」이라는 프로에서 담배회사가 동사 제품인 「마이스로이」를 광고하면서 마약 술 · 맥주 · 섹스 등의 「불법한 향락」을 부추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려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B&WT 회사는 그런 선동을 한 사실이 없고 동사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제 1 심에서 배심원은 B&WT 사에 505 만달러의 배상을 지불하라고 판결에 이르렀으나 재판장 재정으로 배상금액이 300 만 달러로 낮춰졌었다. 이에 CBS 측이 불복 항소했으나 1987 년 8 월, 피고는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다」고 단정, 배심원단에 의한 손해배상 100 만 달러, 징벌배상 205 만 달러의 지불을 그대로 CBS 와 제이콥슨 씨에게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CBS 측이 「상대방에 끼친 손해액이 명확하게 산정될 수 없는 이런 사건에서 300 만 달러의 거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 1 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BS 가 지불해야 할 돈은 305 만 달러의 배상금 외에도 소송비용 200 만 달러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미국에서 확정된 명예훼손배상금은 아웃렛 커뮤니케이션 사에 대한 85 만 달러가 최고였다.

(스웨덴)

공익 아닌 사생활침해보도 삼가야

1982 년 4 월 8 일자 요테보리 티드닝엔 지에 「대도와 도주한 두 아이의 어머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구닐라」라는 여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내용인즉 서독국적의 대도를 도와 스웨덴교도소에서 대도를 탈출케 한 경위와 그 뒤에 발생한 이야기를 읽은 것인데 그 여자는 가족을 버리고 대도와 결혼, 서독으로 갔고, 그곳에서 금고형을 살고 있는 대도가 있는 교도소의 간수들을 매수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남편의 감방에서 단둘이 호젓한 시간을 즐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딸의 스캔들에 충격을 받은

「구닐라」의 아버지가 죽은 사실과 얼굴윤곽은 분명치 않지만 「구닐라」가 남편이 수감된 교도소 앞에 서있는 사진도 게재했다.

이에 「구닐라」는 요테보리 티드닝엔 지에 대한 불만을 호소, 스웨덴신문평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언론윤리규정에 따르면 신문은 뚜렷한 공익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를 삼가야 한다. 문제된 사안에는 뚜렷한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이 경우 건전한 보도관례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하였다.

보성전문 상과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국장, KB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 역임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